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1
----------	-------

제출년월일 : 2003. 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재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할 주민의 수를 “5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함. (안 제2조)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감사담당관실 ☎940-4081
입안자	감 사 담 당 관	안 테 영
	감 사 담 당	최 영 호
	담 당 자	장 문 규

신 · 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주민수 는 <u>500명</u>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 주민수 는 <u>300명</u> 이상이어야 한다.

파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 2003년 4월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함.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 하여야할 주민 수를 현행 “500명 이상” 에서 “300명 이상 ”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조례는 지난 2000. 6. 17일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감사청구가 전무했던 실정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사유가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할 주민수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제도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사청구 요건인 연서 주민수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500명 이상” 에서 “300명 이상 규모”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12월말 현재 파주시 20세 이상 인구수 171,164명 (전체 235,14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 범위 내 인구수(3,423명)에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규모는 동 제도 활성화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 한편, 주민 수를 지나치게 낮게 정할 경우 감사청구 자체를 용이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사소한 민원문제까지 감사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 방 자 치 법

제 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내 타시군 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 현황

2003년 3월 18일 현재

시·군별	조례개정일시	청구인수(명)	비고(주민수)
경기도	300명에서 상향조정 500명		
수원시	2003. 2. .	300	102만명
성남시	진행중(내부결심중)	300	97만명
고양시	진행중(입법예고완료)	250	82만명
부천시	진행중(내부결심중)	미정	84만명
안양시	진행중(내부결심중)	미정	60만명
안산시	2002. 12. .	100	65만명
용인시	진행중(내부결심완료)	700	52만명
시흥시	진행중(입법예고중)	200	36만명
남양주시	진행중(입법예고중)	200	40만명
광명시	2002. 5. .	200	34만명
화성시	진행중(입법예고중)	200	22만명
과천시	2000. 6. .	100	7만명
동두천시	2001. 9. .	200	7.4만명
의정부시	진행중(입법예고완료)	200	38만명
가평군	진행중(입법예고중)	200	6만명